

제336회 제2차 정례회
제5차 기획경제위원회
2022. 12. 13(화)

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
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141
제출일자	2022.11.17.
회부일자	2022.11.22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최병근 의원 외 22명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('18~'22.6) 경상북도 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7,300여건, 총 1,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.
- 특히,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, 코로나19 등 사회적 문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4. 관련법령

-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7. 검토의견

☐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경북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북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☐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해당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‘전기통신금융사기’는 동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.

<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전기통신금융사기”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*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(欺罔)·공갈(恐喝)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 대출의 제공·알선·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.

가. 자금을 송금·이체하도록 하는 행위

나.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·이체하는 행위

*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이란 유선·무선·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·문언·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.

- 이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시킴으로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해석 및 법 적용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.
- 안 제4조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)는 ▶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▶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▶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경북도는 최근 5년('18년~'22.6)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7,300여건으로 총 1,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. 그 피해가 점차 중대해짐에 따라 도차원의 예방책 마련은 중요한 사안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(협력체계 구축)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도와 경상북도경찰청, 금융감독원, 시·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경상북도경찰청,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,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조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지원 사업,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-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.
- 경북도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수는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86억 원, 2019년 293억 원, 2020년 265억 원, 2021년 329억 원, 2022년 상반기 기준 127억 원으로 누적 피해액 수만 1,200억 원에 달함.

< 경상북도 내 최근 5년간('18년~'22.6월)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건수 및 피해액수 >

구분	발생건수	피해액 (억 원)
2018	1985	186
2019	2097	293
2020	1372	265
2021	1381	329.1
2022 (1~6월)	513	127.8
총 계	7,348	1,200.9

-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경북도내에서 상당해지고 있음에 따라 경북도민을 범죄피해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참고**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****1. 경상북도 내 최근 5년(2018년~22.6월 상반기 기준)간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건수 및 피해액수**

구분	발생건수	피해액 (억원)
2018	1985	186
2019	2097	293
2020	1372	265
2021	1381	329.1
2022 (1~6월)	513	127.8
총 계	7,348	1,200.9

**2. 경상북도 내 최근 3년(2020년~2022.6월 상반기 기준)간
고령층(60세 이상)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**

구분	발생건수 (60세 이상)
2020	119
2021	228
2022 (1~6월)	81